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박 종 길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는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1조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44
----------	----------

발의일자: 2022. 11. 04.

발의자: 박종길, 장호섭, 최홍린,
정순옥, 황국주, 박정환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 나.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 다.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구청장이 협의체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마.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안 제10조)
-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활기업의 인정)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활기업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실무자회의)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 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 가. 직업안정기관
 -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